

# '20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21년 필요인원 신청·추천 지침



## 차

<b>제1장 '20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1년 필요인원 신청·추천</b>	<b>1</b>
<b>I.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b>	<b>2</b>
1. 병역지정업체 선정 대상	2
2. 병역지정업체 신청 비대상	3
3.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신청업체가 작성·구비해야 할 서류	4
▪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 작성요령	5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 작성요령	6
▪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작성요령	13
<b>II.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추천</b>	<b>17</b>
1. 신규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방법	17
2.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 검토/작성	18
3. 병무청 통보 방법	18
<b>제2장 기존 병역지정업체 '21년 필요인원 신청·추천</b>	<b>19</b>
<b>I.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b>	<b>20</b>
1. 필요인원 신청방법	20
2. 기존 병역지정업체가 작성·구비해야 할 서류	22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작성 요령	23
▪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작성요령	27
<b>II.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추천</b>	<b>31</b>
1.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방법	31
2.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검토/작성	32
3. 병무청 통보방법	33
<b>제3장 농어업분야 '21년 필요인원 신청·추천</b>	<b>34</b>
<b>I.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추천</b>	<b>35</b>
[붙임] 서식 1~9 및 참고 자료 1~2	36~49

### ['20년 달라진 주요 내용]

구분	2019년	2020년	비고
선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년 산업체 병역지정업체 조기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충역 산업기능요원만 인원배정 신청한 중소기업, 8월 중 선정</li> <li>- 이외 중소기업은 11월 중 선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산업체 병역지정업체 2회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기(보충역만 채용하는 업체) : 접수 1월 → 선정 5월</li> <li>* 하반기(기존과 동일) : 접수 6월 → 선정 11월</li> </ul> </li> </ul>
배정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년도 산업기능요원 우선배정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 중 산학일체형 도제식교육 참여자</li> <li>- (2순위) 1순위 외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 기술계 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계대안학교는 '한국폴리텍 다솜고'만 해당함.</li> </ul>

## 제1장 '20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1년 필요인원 신청·추천

### □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관련 서류

구 분	작성 및 제출서류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신청 업체 (추천기관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선정 신청서 &lt;서식1&gt;</li> <li>○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 &lt;서식2&gt;</li> <li>○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lt;서식3&gt;</li> <li>○ 선정 및 평가기준 관련 구비서류 제출</li> </ul>
추천권자 (병무청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 &lt;서식2&gt;</li> <li>-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lt;서식3&gt;</li> </ul> </li> <li>○ 구비서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율 확인서</li> <li>*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필요인원 신청명부&lt;서식2&gt; V열 해당업체만 제출</li> <li>- 별도배정자 증빙서류 (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li> <li>* 발급대상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li> </ul> </li> </ul>

# I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 1. 병역지정업체 선정 대상

가. 공업분야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법인)
-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공장(정보처리분야의 경우, 사업장)이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건축물관리대장」확인)
-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 단,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산학연계 3자(학교-학생-업체)취업 협약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정보처리분야 업체는 S/W개발·게임S/W·애니메이션제작이 주된 사업(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로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 및 동일법인 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함.
  -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6월이 되는 월까지 (창업 또는 합병으로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월까지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월까지 / 단, 신청월 전월이 창업일이 속한 월인 경우는 신청월 전월 말일 기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6으로 나눈 공장(사업장)의 평균 인원이 10명(5명) 이상. 다만,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당일 반드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5명) 이상 이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보험 납부대장 등으로 확인

나. 에너지업 분야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중소·중견기업 법인)

다. 광업 분야

-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광물(석탄 제외)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업체(중소·중견기업 법인)

라. 건설업 분야

-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국내·외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중소·중견기업 법인)

마. 수산업 분야

- 어선(임차선박을 포함)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법인)

바. 해운업 분야

-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법인)

사. 방위산업 분야 :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법인)

## 2. 병역지정업체 신청 비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 가.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1)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 2)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 3) 업체요청 (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다만, 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14.12.31.이전 발생업체 : 2년)
- \* 3호나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라.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다만, 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 \* 제3호나목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년도(19년도) 산업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다만,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로 확인】
- 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 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 3.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신청업체가 작성·구비해야 할 서류

- 가.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작성)<서식1>
- 나.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작성)<서식2>
- 다.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작성)<서식3>
- 라.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관련 증빙서류(구비)

- 기업규모 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 산업재해율 확인 : 산업재해율확인서(안전보건공단)
- 별도 인원배정 대상 확인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업종별 추천권자(신청 접수기관)에게 작성·구비서류 제출

### 3-가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 작성요령

-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1>
- 나. 작성요령
- 1) 업체명 : 공업분야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기타는 법인의 명칭 기재하되, “주식회사”는 (주)로 기재
  - 2) 업체 소재지(선정 실태조사시 필요하며, 정확히 기재 요망)
    - 공업분야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 3)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란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란에, 그 외 업체는 대기업란에 √로 표시)
  - 4) 대표자 성명 :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자명 기재
  - 5)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사업장)의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의 구내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기재
  - 6) 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설립일자 기재
  - 7) 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재하되, 100만원 단위로 기재
  - 8) 업종/산업분류코드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제2017-13호)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업종 명확히 구분
    -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참고
  - 9)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 품목명(주 공사내용), 평균매출액 및 수출액(100만원 단위), 건축물 용도 등 기재

- 10) 직원 현황(대표이사, 일용직, 3개월 이내의 기간제근로자 제외)
- 법인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항목에 맞게 기재
  - 공장(사업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내 상시근로자 수와 동일법인내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수의 합 기재
- \*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 11) 산업기능요원 필요(신청)인원
- 중소기업 : 현역 및 보충역
  - 중견기업 : 보충역만 기재
- ※ 해운·수산분야는 인원기재 불필요
- ※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가 선정된 경우 현역 인원배정은 1개 업체로만 배정
- 12) 선박보유현황(해운·수산업분야)
- 업종은 해운업(해상화물운송사업 내·외항, 외항선박관리업체), 수산업(원양, 근해어업)으로 구분 기재
  - 소유 구분은 선주, 선박관리 등으로 구분 기재
  - 선박명, 총톤수, 조업(항해)구역, 소유(임차) 연월일, 어획·운송 실적(억원), 수출액(억원) 등 상세히 기재
- 13) 연구기관 선정
- 신규신청 신청업체의 부설연구소가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거나 신규신청한 경우 해당란에 작성

- 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상의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참고
- 공업 분야 - 게임S/W제작, 기계,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생활용품, 섬유, 수산물가공, 시멘트 및 요업, 식품·음료, 신발, 영상게임기, 의료기기 및 의약, 임산물가공, 전기, 전자, 정보처리, 철강, 통신기기, 화학, 애니메이션 중 해당 업종 기재
  - 기타 분야 - 광업, 에너지업, 국내건설업, 해외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방위산업으로 기재
- 3) B열(기업규모) :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기재, 이외 업체는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기재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8조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4) C열(업체명) : 공업분야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기타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되, “주식회사”는 (주)로 기재
- 5) D~F열(소재지)
- 공업분야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 6) G열(대표자) ~ K열(사업자등록번호) : 해당내용 기재
- 7) L~N열(전화번호, 팩스번호)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사업장)의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의 성명, 구내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기재금지), 전자우편, 팩스번호 기재
- 8) O열(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자 기재
- 9) P열(산업분류코드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3-나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 작성요령

- 가. : 붙임 <서식 2>
- 나. 작성요령( (기간·방위산업체) 선정신청서)와 같은 항목은 동일하게 기재)
- ☞ A열부터 AF열까지 기재 "AG~AI열(평가점수, 평가순위, 평가등급) 작성 제외"
- 1) A열(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한국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상의 항목 참고 기재

\*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의 업종’ 란의 코드번호

10) Q열[주생산품목명(선박척수 및 톤수) : 해당사항 기재

11) R열(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재하되, 100만원 단위로 기재

12) S열(법인직원수) : 선정 신청서상의 법인 전체 직원수 기재

13) S열[공장(사업장)직원수] : 선정 신청서상의 공장(사업장)과 동일법인내의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수의 합 기재

\* 대표이사, 일용직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 제외

\* 내 다수 공장(사업장) 신청 시, 연구소 상시근로자 수는 1개 공장(사업장)에만 포함

14) T열(평균매출액) : 평균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참조

15) U열(수출액) : '19년도 수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16) V열(산업재해율 평균상회 여부)

- '19년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규모의 산업재해율 보다 높은 업체는 선정제외이나,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건수를 제외 시 평균보다 낮게 산정될 경우 'O'로 기재하고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 '19년 산업재해율이 평균이상인 경우 추천제외 하고, 위 경우만 추천

17) W열(산학연계 협약 여부)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 마이스터고와 협약하고 협약학교 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마이스터고**”로 기재
-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업체로서 협약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 ‘유니테크(Uni-Tech)사업’ 참여업체로서 협약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유니테크**”로 기재

○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참여업체로서 협약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영마이스터**”으로 기재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 그 외 업체는 “**특성화고 등**”으로 기재

졸업자에는 '21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1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채용예정 확인서)

※ 산학연계 협약형태

구 분	주관기관	협약형태	취업경로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중앙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3자(기업-학교-학생) 협약	특성화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마이스터고 산학연계 협약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	2자협약	마이스터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중소기업 기술사관 산학연계 협약	중소벤처기업부	2자 또는 3자 협약	→ 전문대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유니테크 산학연계 협약	교육부/고용노동부	2자 또는 3자 협약	특성화고 → 전문대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산학연계 협약	중소벤처기업부	3자 채용약정	특성화고 →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일학습병행제 협약	고용노동부	2자 협약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 → 협약 기업 취업(교육)
특성화고 산학연계 협약(중앙부처 외)	지자체, 지역교육청, 기업 등	2자 또는 3자 협약	특성화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18) 필요인원 X~AC열(현역), 필요인원 AF열(보충역)

○ 중소기업 : 현역 및 보충역 필요인원 기재

○ 중견기업 : 보충역만 기재

※ 현역은 아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 을 참고하여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인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현황에 반영

※ 중소기업체 중 보충역만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보충역만 기재(8월중 선정)

※ 해운·수산업 분야는 인원기재 불필요

3 순위	○ '1~2-1순위' 이외의 사람 (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	AB열 해당
별도 배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AC열 해당

\* 특성화고 : 시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로 인정된 학교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 (현역)

구분	대 상 자	비 고
1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성화고 졸업자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자</li> <li>-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3자) 협약자</li> <li>-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li> <li>-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li> </ul> </li> <li>-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li> </ul> </li> <li>○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참여자</li> </ul> </li> <li>○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li> <li>○ 유니테크(Uni-Tech) 졸업자</li> <li>○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자</li> </ul> <p>※ '01년12월31이전 출생자 해당</p>	<p>Y열 해당</p> <p>*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중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을 평일주간에 하는 학습근로자는 제외 - '21년 중에 학습 종료자는 배정대상</p>
2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성화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자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기관의 산학협력사업(기업-학교2자)협약자</li> <li>-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의 산학협력사업 협약자</li> <li>- 중소기업의 자율적으로 산학협력 협약자</li> <li>- 협약 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졸업자 등</li> </ul> </li> <li>○ 기술계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습고) 졸업자</li> </ul> <p>※ '01년12월31이전 출생자 해당</p>	Z열 해당
2-1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년생 출생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li> <li>○ '02년생 출생자로서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20년도 졸업이후('20년 3월 이전 취업자)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li> </ul>	AA열 해당

- Y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1순위 해당자
- Z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순위 해당자
- AA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1순위 해당자
- AB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3순위 해당자  
(현재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배정 희망인원 기재)

졸업자에는 '21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1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20년 10월 경 인력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01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는 현역에 포함.  
다만, 병역판정검사결과 보충역 판정 시 배정인원 회수

※ '02년생은 '현역'에 포함하고, '03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 등 신청 비대상  
○ AC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별도배정 해당자

작성시 유의사항 ]

- ▷ 동일법인 내 2개 이상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는(AD열 '예'로 기재) 최종 선정 이후(11월 말경)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의 병역지정업체로만 현역 인원배정 됨 (보충역은 모든 업체 활용 가능)
- ▷ 인원배정 신청 당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생(예정자 포함)으로서 업체에 채용(예정자 포함)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우선 인원 배정 대상이 되며,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

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의 경우에 배정 가능

\* 다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직업계열학과), 기술계대안학교 졸업 후 업체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취업해 있는 경우는 위와 같은 우선 인원배정 대상과 관계없이 별도 인원배정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현역대상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필요한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예정)자를 채용해야 함  
\* 품질 및 재고관리, 경리, 회계사무 등 관리·사무·영업부서 근무 불가함

▷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은 아래 대상 업종에 한하여 편입할 수 있고 별도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므로, 해당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하여야 함.

○ 대상 업종 : ① 정보처리업, ②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③ 애니메이션 제작업, ④ 영상게임기제작업, ⑤ 통신기기제조업, ⑥ 방위산업

○ 자격 요건 :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소지자로서 아래사항 해당자

- 고등학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과정을 이수한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등 학력을 인정 받은 사람 포함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사람
-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b>3-다</b>	<b>“현역 인원배정 근무자 명부” 작성요령</b>
------------	------------------------------

가. : 붙임 <서식 3>

나. 작성대상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의 **Y열~AA열, AC열에 기재한 인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작성**

\* **필요인원 신청 명부(Y~AA열AC열)의 현황과 근무자 명부의 인원이 반드시 일치**

다. 작성요령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중 보충역만 인원배정 신청한 업체는 작성 제외**

1) B-G열(업종)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내용과 일치

\* (신규업체) : B열(업체코드)은 ‘신규업체’로 기재

2) H열(성명) : 업체에 종사중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유니테크 졸업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성명

3) I열(생년월일) : 2001년7월10일생의 경우 **“20010710”** 형태로 기재

4) J열(출신학교명) : “○○공업고” 형태로 기재

5) K열(전공과) : 전공과 기재

6) L열(역종) : 병역판정검사 결과 기재 (현역)

\* **‘01년생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산체검사 대상자 포함)와 ‘02년생은 ‘현역’으로 표기**

7) M(열)업체 취업일자 : “20200225” 형태로 기재

\* 인원배정은 10월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배정 가능 (졸업예정자는 취업예정일자 기재)

8) N열(기술자격 명칭) : “기계조립기능사” 형태로 기재

\* 현역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반드시 국가기술자격증 필요하며, 특히 ‘정보

처리·게임SW·애니메이션' 업종은 관련학과 전공 졸업자 등에 한함

- 9) O열(인원배정대상 구분)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 작성요령 '3-나-17(필요인원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 참고하여 작성

가) 우선 인원배정 대상자 (신청명부의 Y~AA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 \*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2년생은 AA열)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 \*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2년생은 AA열)
- 협약한 마이스터고 학교 졸업생은 “**마이스터고**”로 기재
  -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2년생은 AA열)
-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협약자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2년생은 AA열)
- '유니테크(Uni-Tech)사업' 협약자는 “**유니테크**”로 기재
  -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2년생은 AA열)
-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협약자는 “**영마이스터**”로 기재
  -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열 해당('02년생은 AA열)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2자) 협약자, 지자체·지역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 협약학교 졸업생, 기업 자율에 의한 산학협약학교 졸업생,

산학협약 없이 채용한 특성화고 졸업생 등 특성화고(3자)외 특성화고 졸업생은 “**특성화고**”로 기재

-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Z열 해당
- 일반고(종합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는 “**일반고 직업계열**”로 기재
  -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Z열 해당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 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인가한 학교(한국폴리텍대숲고)는 “**기술계 대안학교**”로 기재
  -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Z열 해당
- ※ 졸업자에는 '21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1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나)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 (신청명부의 AC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재
  - \* 수급자 증명서(서식7 참조) 별도 제출.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 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기재
  - \* 차상위계층 확인서(서식8 참조) 별도 제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

### 모가족지원대상자”로 기재

- \* 한부모가족증명서(서식9 참조) 별도 제출. 지원대상자가 가족(부 또는 모)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 다)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AF열)

- 사회복지무요원 소집대상자(보충역)만 채용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만 작성
- \* 현역 필요인원 신청 없이 보충역만 배정 신청한 경우는 올해 8월 중에 조기 선정하고, 선정일로부터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함.

## II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추천(추천권자)

### 1. 병역지정업체 추천평가 방법

가. 추천기관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구분하여 추천·평가 (별도시트)

나. 추천기관은 업종별로 추천대상 업체의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10개 등급(A~J등급)으로 균등 배분하여 추천 (방위산업체는 제외)

- 추천등급은 업종별로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10개 등급(A~J등급)으로 균등 배분하여 등급 부여

【예시】 동일 업종에 총 40개 업체가 신청을 한 경우, 평가점수 순으로 A부터 J까지 각 4개씩 등급부여

다. 추천등급은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배점 및 등급 부여

- 추천기관 자체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배점 부여 후 등급 부여
- \_\_\_\_\_·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와 산학연계 협약업체 및 일학습병행제(\_\_\_\_\_ 특성화고 도제식교육 포함) 참여업체\*, 청년친화 강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인정사업장(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안전보건공단), **근무혁신 기업** 등  
\_\_\_\_\_ 우수업체 우대 배점 부여(기 협조사항)

☞ 2020년 제1차 산업지원 운영위원회(20.5.13.)

-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협약) 업체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 맞춤형,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 \*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 \* 유니테크(Uni-Tech)와 산학연계 협약업체
- \*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 \* 일·학습병행제 참여(산학일체형 특성화고 도제식교육 참여 포함) 업체 (학습근로자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예정자 포함)인 경우)

## 2.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 검토/작성

가.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신청업체에서 작성 신청한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기재사항 확인·검토 및 평가점수·평가순위·평가등급 작성

☞ A~AF열까지 확인·검토, **AG~AI열**(평가점수·순위·등급) 작성

○ **중소기업의 우선 인원배정 및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 인원**(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Y~AA열, AC열)과 **근무자 명단 일치여부 확인, 수정**

- '근무자 명부'의 인원배정 대상 구분(O열) 확인 시 신청업체에서 필요한 서류(산학연계협약서, 수급자증명서 등) 징구 등을 통하여 확인

나. 병역지정업체 추천평가란 작성

- 1) AG열(평가점수) : 모든 업체에 대해 업종별 평가점수 기재
- 2) AH열(평가순위) : 평가점수에 따른 순위 기재
- 3) AI열(평가등급) : 평가점수 순에 따라 A~J등급 균등배분

※ 동점일 경우에는 자체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두어 균등배분

## 3. 병무청 통보방법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서식2>”,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서식3>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20. 7 .31.까지 통보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구분하여 통보 (별도 시트)**

\*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는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근무자 명부와 구분하여 통보(별도파일)

\* 구비서류 목록 : 산업재해율확인서, 별도배정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증빙(추가)서류

## 2장 기존 병역지정업체 '21년 필요인원 신청·추천

###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추천 관련 서류

구 분	작 성 서 류
병역지정업체 (추천기관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lt;서식4&gt;</li> <li>○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lt;서식3&gt;</li> <li>○ 선정 및 평가기준 관련 구비서류 제출</li> </ul>
추천권자 (병무청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lt;서식4&gt;</li> <li>○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lt;서식3&gt;</li> <li>○ 구비서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배정자 증빙서류 (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li> <li>* 발급대상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li> </ul> </li> </ul>

※ 해운·수산업분야와 중견기업은 신청 필요 없음 (방위산업체는 신청)

# I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 1. 필요인원 신청 방법

가. 필요인원 신청 비대상 업체 : '21년 인원배정제한 업체

- 복무관리부실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처분받은 해 다음해부터 적용)
  - 고발업체 : 3년('18년~'20년 고발된 업체)
  - 경고업체 : 2년('19년~'20년 경고받은 업체)
  - 주의업체 : 1년('20년 주의받은 업체)
- '20년에 파산된 업체
- '19년에 인원배정을 받고 채용하지 아니하고 '20년에도 인원배정을 받았으나 올해 말까지 전혀 채용할 계획이 없는 업체
- '19~'20년에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부당대우·부당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18년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 '19~'20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업체
- '20년에 산업기능요원 6개월 초과 편입지연 업체
- '19~'20년에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3개월 이상 임금체불 업체
- '18~'20년에 산업기능요원에 「최저임금법」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형 이상 확정된 업체
- '20년에 산업기능요원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 판정자가 발생한 업체

- 나.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생을 우선 배정함에 따라, 우선 배정대상자별 해당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인원을 기재하고, <서식4>의 우선 배정대상자 인원(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의 1~2-1순위)과 <서식3>의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단이 일치하게 작성
- \* 우선 인원배정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신청업체에서는 필요한 서류(산학연계협약서, 취업예정확인서 등)를 구비, 제출
  - 인원배정 신청 당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생(예정자 포함)으로서 업체에 채용(예정자 포함)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우선 인원배정 대상이 되며,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의 경우에 배정 가능
    - \* 다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직업계열학과), 기술계대안학교 졸업 후 업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해 있는 경우는 별도로 인원배정함에 따라('19년 신설), 아래 해당하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서식3>의 근무자 명단이 일치하게 작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별도 인원배정대상자 확인을 위해 구비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증명서 발급 대상자가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라.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은 아래 대상 업종에 한하여 편입할 수 있고 별도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므로, 해당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하여야 함.

- 대상 업종 : ①정보처리업, ②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③애니메이션 제작업, ④영상게임기제작업, ⑤통신기기제조업, ⑥방위산업
- 자격 요건 :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소지자로서 아래사항 해당자
  - 고등학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과정을 이수한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등 학력을 인정 받은 사람 포함)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사람
  -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가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작성요령**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4>

나. 작성요령

- 1) A열(업체코드) : 병무청에서 부여한 고유코드(업체 기재 생략)
- 2) B열(업종) : 병무청에 등록된 업종
  - 공업 분야 - 게임S/W제작, 기계,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생활용품, 섬유, 수산물가공, 시멘트 및 요업, 식품·음료, 신발, 영상게임기, 의료기기 및 의약, 임산물가공, 전기, 전자, 정보처리, 철강, 통신기기, 화학, 애니메이션 중 해당 업종 기재
  - 기타 분야 - 광업, 에너지업, 국내건설업, 해외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방위산업으로 기재
- 3) C열(기업규모) :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기재, 이외 업체는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기재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8조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4) D (업체명) : 병무청에 등록된 업체명
- 5) E열(소재지)
  - 공업분야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 기타분야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 6) F열(대표자)~H열(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등 해당내용
- 7) I열(전화번호), J열(팩스번호), K열(홈페이지), L열(이메일)
  - 전화 및 팩스번호는 민원인이 많이 활용함을 감안, 산업기능요원

**2. 기존 병역지정업체가 작성·구비해야 할 서류**

가.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작성)<서식4>

나.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작성)<서식3>

다.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관련 증빙서류(구비)

\* 업종별 추천권자(신청 접수기관)에게 작성·구비서류 제출

업무 담당자 전화(휴대전화번호 기재금지) 및 팩스번호 정확히 기재

- 8) M (주생산품목) : 병역지정업체에서 생산하는 주 생산품 기재
- 9) N열(선정년도)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도(업체 기재 생략)
- 10) O열(자산총액)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재하되, 100만원 단위로 기재
- 11) P~Q열(상시근로자) : 필요인원 신청일 현재 법인 전체 상시근로자수, 병역지정업체 공장(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12) R열(평균매출액) : 평균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참조

13) S (산학연계 협약 여부)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 마이스터고와 협약하고 협약학교 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마이스터고”**로 기재
-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업체로서 협약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 ‘유니테크(Uni-Tech)사업’ 참여업체로서 협약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유니테크”**로 기재
-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참여업체로서 협약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영마이스터”**으로 기재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 그 외 업체는 **“특성화고 등”**으로 기재

졸업자에는 '21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1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채용예정 확인서)

※ 산학연계 협약형태

구 분	주관기관	협약형태	취업경로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중앙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3자(기업-학교-학생) 협약	특성화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마이스터고 산학연계 협약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	2자협약	마이스터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중소기업 기술사관 산학연계 협약	중소벤처기업부	2자 또는 3자 협약	→ 전문대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유니테크 산학연계 협약	교육부/고용노동부	2자 또는 3자 협약	특성화고 → 전문대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산학연계 협약	중소벤처기업부	3자 채용약정	특성화고 →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일학습병행제 협약	고용노동부	2자 협약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 → 협약 기업 취업(교육)
특성화고 산학연계 협약(중앙부처 외)	지자체, 지역교육청, 기업 등	2자 또는 3자 협약	특성화고 졸업 → 협약 기업 취업

14) T~Y열(필요인원) : 현역만 기재(보충역은 총괄 배정으로 불필요)

- 아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을 참고하여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인별로 정확히 구분하여 현황에 반영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 (현역)**

구분	대 상 자	비 고
1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성화고 졸업자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협약자</li> <li>- 중소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및충만(3자) 협약자</li> <li>-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li> <li>-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li> </ul> </li> <li>-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li> </ul> </li> <li>○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참여자</li> </ul> </li> <li>○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li> <li>○ 유니테크(Uni-Tech) 졸업자</li> <li>○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자</li> </ul> <p>※ '01년12월31이전 출생자 해당</p>	<p><b>U열 해당</b></p> <p>*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중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을 평일주간에 하는 학습근로자는 제외 -'21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p>
2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성화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자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기관의 산학협력사업(기업·학교·2자)협약자</li> <li>-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의 산학협력사업 협약자</li> <li>- 중소기업의 자율적으로 산학협력 협약자</li> <li>- 협약 없이 업체에 근무중인 졸업자 등</li> </ul> </li> <li>○ 기술계 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승고) 졸업자</li> </ul> <p>※ '01년12월31이전 출생자 해당</p>	<p><b>V열 해당</b></p>
2-1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년생 출생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li> <li>○ '02년생 출생자로서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20년도 졸업이후('20년 3월 이전 취업자)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li> </ul>	<p><b>W열 해당</b></p>
3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1순위' 이외의 사람 (실제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인원 기재)</li> </ul>	<p><b>X열 해당</b></p>
별도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li> <l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li> <li>-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li> </ul>	<p><b>Y열 해당</b></p>

\* 특성화고 : 시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로 인정된 학교

- U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1순위 해당자
- V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순위 해당자
- W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2-1순위 해당자
- X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3순위 해당자 (현재 채용여부와 관계없이 배정 희망인원 기재)

졸업자에는 '21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1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20년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 '01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는 현역에 포함.

다만, 병역판정검사결과 보충역 판정 시 배정인원 회수

※ '02년생은'현역'에 포함하고, '03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 등 신청 비대상

- Y열 :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에서 별도배정 해당자

2-나	<b>“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작성요령</b>
-----	---------------------------------

가. : 붙임 <서식 3>

나. 작성대상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W열**

**Y열에 기재한 인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작성**

\* **필요인원 신청명부와 근무자 명부의 인원이 반드시 일치**

다. 작성요령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중 보충역만 인원배정 신청한 업체는 작성 제외**

- 1) B~G열(업종)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내용과 일치
  - \* **(기존업체)** : B열(업체코드)와 C열(업체명)은 병무청 업체명부의 '업체코드'와 '업체명'을 일치하게 기재

- 2) H열(성명) : 업체에 종사중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 기술사관·유니테크 졸업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성명

- 3) I열(생년월일) : 2001년7월10일생의 경우 **“20010710”** 형태로 기재

- 4) J열(출신학교명) : “○○공업고” 형태로 기재

- 5) K열(전공과) : 전공과 기재
- 6) L열(역종) : 병역판정검사 결과 기재 (현역)
  - \* '01년생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산세검사 대상자 포함)와 '02년생은 "현역"으로 표기
- 7) M(열)업체 취업일자 : "20200225" 형태로 기재
  - \* 인원배정은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배정 가능 (졸업예정자는 취업예정일자 기재)
- 8) N열(기술자격 명칭) : "기계조립기능사" 형태로 기재
  - \* 현역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반드시 국가기술자격증 필요하며, 특히 '정보처리.게임SW.애니메이션' 업종은 관련학과 전공 졸업자 등에 한함
- 9) O열(인원배정 대상 구분)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필요 인원 신청명부" 작성요령 '2-가-14(필요인원의 '인원배정 대상자 구분(현역)' 참고하여 작성

**가) 우선 인원배정 대상자 (신청명부의 U~W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는 "특성화고(3자)"로 기재
  -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열 해당('02년생은 W열)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생 중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자는 "일학습병행"으로 기재
  -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열 해당('02년생은 W열)
- 협약한 마이스터고 학교 졸업생은 "마이스터고"로 기재
  -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열 해당('02년생은 W열)
-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협약자는 "기술사관"으로 기재
  -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열 해당('02년생은 W열)

- '유니테크(Uni-Tech)사업' 협약자는 "유니테크"로 기재
  -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열 해당('02년생은 W열)
-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협약자는 "영마이스터"로 기재
  -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열 해당('02년생은 W열)
- 중앙 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2자) 협약자, 지자체·지역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 협약학교 졸업생, 기업 자출에 의한 산학협약학교 졸업생, 산학협약 없이 채용한 특성화고 졸업생 등 특성화고(3자)의 특성화고 졸업생은 "특성화고"로 기재
  -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V열 해당
- 일반고(종합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는 "일반고 직업계열"로 기재
  -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V열 해당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 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인가한 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는 "기술계 대안학교"로 기재
  -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V열 해당
- ※ 졸업자에는 '21년도 졸업예정자도 포함되며, 채용자에는 '21년도 채용예정자도 포함됨 (10월 경 인원배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 확인

**나)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 (신청명부의 Y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재
  - \* 수급자 증명서(서식7 참조) 별도 제출.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 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기재
  - \* 차상위계층 확인서(서식8 참조) 별도 제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기재
  - \* 한부모가족증명서(서식9 참조) 별도 제출. 지원대상자가 가족(부 또는 모)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 II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추천(추천권자)

### 1.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방법

- 가. 추천기관은 업종별로 추천대상 업체의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10개 등급(A~J등급)으로 균등 배분하여 추천(방위산업체는 제외)
    - 추천등급은 업종별로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10개 등급(A~J등급)으로 균등 배분하여 등급 부여
- 【예시】** 동일 업종에 총 40개 업체가 신청을 한 경우, 평가점수 순으로 A부터 J까지 각 4개씩 등급부여

- 나. 추천등급은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배점 및 등급 부여
    - 추천기관 자체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배점 부여 후 등급 부여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와 산학연계 협약업체 및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특성화고 도제식교육 포함)참여업체\*, 청년친화 강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인정 사업장(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안전보건공단), **근무혁신기업** 등 **근로 환경 우수업체 우대 배점 부여(기 협조사항)**
- ☞ 2020년 제1차 산업지원 운영위원회(20.5.13.)

-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협약) 업체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 맞춤형,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 \*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 \* 유니테크(Uni-Tech)와 산학연계 협약업체
- \*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 \* 일·학습병행제 참여(산학일체형 특성화고 도제식교육 참여 포함) 업체 (학습근로자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예정자 포함)인 경우)

## 2.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검토/작성

가. 병역지정업체에서 신청한 '필요인원 신청명부' 기재사항 검토 및 평가점수·순위·등급, 비교 작성

☞ A~Y열까지 확인·검토, Z열~AC열(평가점수·순위·등급, 비교) 작성

- 업체의 우선 인원배정 및 별도 인원배정 대상자 인원(기존 병역 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U~W열, Y열)과 근무자 명단 일치 여부 확인, 수정

- '근무자 명부'의 인원배정 대상 구분(O열) 확인 시 신청업체에서 필요한 서류(산학연계협약서, 수급자증명서 등) 징구 등을 통하여 확인

- 업체에서 작성한 항목별 기재사항 이상 유무 검토, 수정

나.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4)」의 **A~H열, N열**(업체 코드, 업종, 기업규모,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 선정년도)는 **금지**. 다만 필요인원을 신청한 업체의 정보와 병무청 통보 명부의 정보가 상이할 경우 **AC(비고)란에 기재하고**, 병무청 통보 명부에 없는 업체(**명부상 누락업체**)가 신청한 경우 **명부 맨하단에 작성**(비고란에 “추가”로 기재)하여 통보

\* : A~H열, N열은 전산 확인용 자료이므로, 변경 시 자료 이식이 되지 않음.

다. 병역지정업체 추천평가란 작성

1) Z열(평가점수) : 모든 업체에 대해 업종별로 평가점수 기재

2) AA열(평가순위) : 평가점수에 따른 순위기재

3) AB열(평가등급) : 평가점수 순에 따라 A~J등급 균등배분

\* 동점일 경우에는 자체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균등배분

4) AC열(비고) : 신청한 업체의 해당정보(A~H열, N열)중 병무청 통보명부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기재

## 3. 병무청 통보방법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서식 4>”,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서식3>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20. 7. 31. 까지 통보

\*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구분하여 통보 (별도 시트)**

\*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는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근무자명부와 구분하여 통보(별도파일)

\* 구비서류 목록 : 산업재해율확인서, 별도배정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증빙(추가)서류

## 제3장 농어업분야 '20년 필요인원 신청·추천

### □ 필요인원 추천 관련 서류

구 분	작성 서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병무청에 제출)	○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명부 <서식5>

## I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추천

### 1. 필요인원 신청·추천 방법

가. 작성서식 : 붙임 <서식 5>

나.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명부」의 '후계농어업 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명부'(시트1)와 '농업기계수리 및 운전요원 필요인원 신청명부'(시트2) 구분 작성 \* 보충역도 신청  
다. 작성요령 : 시·도, 구(자치구)·시·군 순으로 작성

#### 1)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 필요인원의 계열(농어업계/비 농어업계) 및 추천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의 평가점수를 정확히 기재

\* 평가배점 기준 및 상한선 배점 적용 철저

\* 신청자의 역종(현역)확인 철저('02년생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재신체검사 대상자 포함)은 "현역" 대상에 포함)

※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농어업계 "전공자" 위주로 배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 2) 농업기계운전·수리요원

○ 시·군·구별로 필요인원 기재

※ 유의사항 : 복무관리 부실, 부당해고·연장근로 강요 등 권익침해 업체는 인원배정 제한하므로 필요인원 신청 시 제외

### 2. 병무청 통보방법

○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명부」를 첨부하여 '20. 7. 31. 까지 통보

<서식 1>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2서식] <개정 2017. 9. 22.>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

(앞쪽)

※ 뒤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서 식

	업체 소재지	
기업규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설립일	자산총액	업종
산업분류코드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생산품목(주 공사내용)	매출액/수출액	건축물 용도

직원 현황 (제외)	구 분	계	사무직	생산직 및 현장 근무자				
				소 계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무자격
직원수	법인							
	공장 (사업장)							

※ 산업기능요원 필요(신청)인원 : 현역 명, 보충역 명

선박보유 현황 (해운수산분야)	선박명	총톤수	조업(항해) 구역	업종	소유 구분	소유(임차) 연월일	어획, 운송 실적(억원)	수출액

연구기관 선정 [ ]	주소	주 연구분야	신규 선정 신청 [ ]
----------------	----	--------	-----------------

같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첨부서류는 뒤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광역본부등본(광역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제출 업체만 해당한다) 1부 2. 해당 업체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1부 3.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광역 분야 기간산업체 중 제출업체는 제외한다) 2.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 관련업종 경영하는 업체만 해당한다) 3.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제조업체만 해당한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신청인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선박유연형의 업종은 연해, 근해로 구분하여 최고 소유 구분은 자산소유, 임차 또는 선박권리로 구분하여 적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연구기관 신청: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주소 및 연구분야를 적습니다(신규로 연구기관과 산업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규 신청 란에 √표시를 하고 주 연구분야를 적습니다).

<서식 2>

**'20년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 및 '21년 필요인원 신청명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업종	기업규모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인터넷주소	E-mail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일	산업분류코드	주생산품목명 (선박척수및특수)	자산총액	직원수		평균매출액	수출액	산업재해율 평균상회여부	산학연계협약여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이하													법인	공장(사업장)				
X	Y	Z	필요인원(현역)										동일법인 내 2개 이상 선정신청 여부 등		AF	AG	AH	AI					
계	① 특성화고 졸업자 중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3자) 협약자 및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 중 일학습병행제 및 도제식교육 참여자 / 마이스터고졸업자 / 중소기업 기술사관/유니테크 졸업자/영마이스터 계열학과 졸업자(01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 1순위		② 특성화: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자 중 ① 이외의 사람(01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 기술계 대학(한국폴리텍대 숭고) 졸업자 - 2순위		③ ①에 해당하는 02년생 출생자 또는 ②에 해당하는 02년생 출생자 중 '20년 졸업이후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중인 사람 - 2-1순위			④ 기타인원(①②③ 이외의 사람) - 3순위		⑤ 별도배정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동일법인 내 기존 병역지정업체가 있거나 또는 신규업체 신청을 2개 이상 하는 경우(예/아니오)		'예'인 경우 현역 인원배정 희망 업체명 (※ 법인대표자의견 기재)		필요인원(보충역) * 보충역만 채용하는 업체는 작성		평가정수	평가순위	평가등급		

※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명부의 이해를 위해 항목을 2개로 나누어 표시(원 명부는 가로서식으로 A부터 I까지 하나의 행으로 연결)

<서식 3>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업체 관련사항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관련사항								
연번	업체 코드	업체 명	소재지			업종	성명	생년월일	출신학교	전공과	역 중 (현역)	업체취업 (예정)일자	기술 자격증 명칭	인원배정 대상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하									

<서식 4>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명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업체 코드	업종	기업 규모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법인 등록 번호	사업자 번호	전화 번호	팩스 번호	홈페이지	이메일	주생산 품목	선정 년도	자산총액 (단위:백만원)	상시근로자수 (단위:명)		평균매출액 (단위:백만원)
															법인	공장	

		필요인원(현역)					추천권자 평가			비고		
산학연계 협약여부	계	① 특성화고 졸업자 중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3자) 협약자 및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 중 일학습병행제 및 도제식교육 참여자 / 마이스터고졸업자/중소기업 기술사관/유니테크 졸업자/영마이스터 개악학과 졸업자(01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 1순위			② 특성화·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자 중 ① 이외의 사람 (01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 기술계 대학(한국폴리텍대 등고) 졸업자 - 2순위		③ ①에 해당하는 02년생 출생자 또는 ②에 해당하는 02년생 출생자 중 '20년 졸업 이후 신청업체에서 계속 근무중인 사람 - 2-1순위		④ 기타인원(①②③ 이외의 사람) - 3순위		⑤ 별도배정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평가 점수	평가 순위	평가 등급								

\* 기존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명부의 이해를 위해 항목을 2개로 나누어 표시(원 명부는 가로서식으로 A부터 AB까지 하나의 행으로 연결)



호	수급자 증명서
1. 성명:	(생년월일: )
2.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
3. 주소(소재지):	
4. 수급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교육급여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보장시설 수급자
5. 용도:	
	(제출처)
<p>「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직인</span></p>	
<p>* 유의사항: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단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이 발급합니다.</p>	

차상위계층 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소재지)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용도			
제출처			
<p>「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p> <p>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발급번호    제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직인</span></p>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4.7.22>

<p>제 호</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한부모가족증명서</p>
<p>1. 성명: (생년월일: )</p> <p>2.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p> <p>3. 주소(소재지):</p> <p>4. 제출용도: (용 도) (제출처)</p> <p>5. 선정일자:</p> <p>「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font-weight: bold;">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span>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 margin-left: 20px;">직인</span> </p>

210mm×297mm [백상지 120g/㎡]

**참고 1** 일학습병행 · 도제학교 사업단 현황

(‘19년 말 기준)

시·도	사업단(대표 학교)	참여 학교
<b>계</b>	<b>67</b>	<b>194</b>
서울	성동공업고	5개교(성동공업고, 서울아이티고, 영등포공고, 인덕공고, 한양공고)
	용산공업고	5개교(용산공업고, 서울전자고, 성수공고, 세명컴퓨터고, 광운전자고)
	신진과학기술고	4개교(신진과학기술고, 성수공고, 인덕공고, 휘경공고)
	서울공업고	1개교(서울공고)
	동일여자상업고	4개교(동일여상, 서울컨벤션고, 서일국제경영고, 신정여상)
	세명컴퓨터고	4개교(세명컴퓨터고, 상일미디어고, 서울디지텍고, 한양공고)
	휘경공업고	3개교(휘경공고, 광운전자공고, 한양공고)
	은평메디텍고	4개교(은평메디텍고, 덕일전자공고, 영락유헬스고, 유한공고)
	대한미용사회	7개교(대한미용사회, 경북생활과학고, 삼성생활예술포, 상서고, 인천뷰티예술고, 인천생활과학고, 전남미용고)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4개교(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용산공고, 유한공고, 휘경공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개교(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광명경영회계고, 인평자동차고)
	인천기계공업고	1개교(인천기계공업고)
인천	부평공업고	3개교(부평공업고, 청학공고, 도화기계공고)
	인평자동차고	1개교(인평자동차고)
	인천재능고	<b>1개교(인천재능고)- 유니텍 전환</b>
	인천하이텍고	4개교(인천하이텍고, 부평공고, 인천정보산업고, 재능고)
경기	시화공업고	1개교(시화공업고)
	안성두원공업고	<b>1개교(안성두원공고)- 유니텍 전환(기존 도제학교)</b>
	부천공업고	3개교(부천공업고, 산본공고, 김포제일공고)
	경기자동차과학고	4개교(경기자동차과학고, 부천공업고, 산본공고, 의정부공고)
	평촌공업고	3개교(평촌공고, 부천공업고, 군자디지털과학고)
	양영디지털고	4개교(양영디지털고, 경기자동차과학고, 삼일상고, 성일정보고)
	삼일공업고	4개교(삼일공고, 광명공고, 수원공고, 수원전산여고)
	평촌경영고	4개교(평촌경영고, 광명경영회계고, 삼일상고, 인천세무고)
	경기기계공고	<b>1개교(경기기계공고)- 유니텍 전환</b>
	부원고	<b>1개교(부원고)- 유니텍 전환</b>
대전	대전전자디자인고	3개교(대전전자디자인고, 대전생활과학고, 계룡디자인고)
	강경상업고	5개교(강경상업고, 공주정보고, 논산여자상고, 당진정보고, 천안상고)
세종	세종하이텍고	1개교(세종하이텍고)
충남	서산공업고	3개교(서산공고, 천안공고, 논산공고)

	천안공업고	5개교(천안공업고, 서산공고, 아산전자기계고, 충남조선공고, 논산공고)
	예산전자공업고	4개교(예산전자공고, 논산공고, 부여전자고, 홍성공고)
충북	청주공업고	4개교(청주공고, 제천디지털전자고, 증평공고, 청주하이텍고)
	충북공업고	3개교(충북공고, 제천산업고, 충주공고)
강원	문경공고	<b>1개교(문경공고)- 유니텍 전환</b>
	원주공업고	3개교(원주공업고, 영월공고, 강릉중앙고)
	춘천기계공업고	4개교(춘천기계공고, 영월공고, 원주공고, 태백기계공고)
대구	대구공업고	1개교(대구공업고)
	대구서부공업고	5개교(경북공업고, 경상공고, 대구서부공고, 조일고, 대종금속공업고)
	영남공업고	4개교(영남공고, 경상공고, 대구달서공고, 대구전자공고)
	상서고	3개교(상서고, 대구관광고, 삼성생활예술고)
	경북여자상업고	5개교(경북여자상업고, 대구보건고, 대구여자상고, 대구제일여자상고, 영인정보고)
	대구달서공고	<b>1개교(대구달서공고)- 유니텍 전환</b>
경북	경북기계금속고	1개교(경북기계금속고)
	경주공업고	3개교(경주공고, 흥해공고, 금호공고)
	경북하이텍고	5개교(경북하이텍고, 경북과학기술고, 상산전자고, 상주공고, 영천전자고)
	경주정보고	3개교(경주정보고, 경주여자정보고, 포항과학기술고)
	경북공고	<b>1개교(경북공고)- 유니텍 전환</b>
경남	창원기계공업고	1개교(창원기계공업고)
	진주기계공업고	4개교(진주기계공업고, 경남항공고, 경남자동차고, 경진고)
	울산공업고	1개교(울산공업고)
부산	김해건설공업고	4개교(김해건설공고, 마산공고, 창원슈퍼텍고, 창원공고)
	부산전자공업고	3개교(부산전자공고, 금정전자공고, 대진전자통신고)
	대양전자통신고	4개교(대양전자통신고, 대광발명과학고, 부산디지털고, 부일전자디자인고)
	경남공업고	4개교(경남공고, 경성전자고, 동의공고, 부산에너지과학고)
	부산공업고	4개교(부산공고, 동아공고, 부산항만물류고, 해운대공고)
	부산관광고	<b>1개교(부산관광고)- 유니텍 전환</b>
전북	삼례공업고	3개교(삼례공고, 전주공고, 진안공고)
	전주공고	<b>1개교(전주공고)- 유니텍 전환</b>
전남	광주공업고	1개교(광주공고)
	광주전자공업고	1개교(광주전자공고)
	광양하이텍고	1개교(광양하이텍고)
	목포공업고	4개교(목포공업고, 해남공고, 진도실업고, 구립공업고)
	영암전자과학고	5개교(영암전자과학고, 영광전자고, 순천전자고, 정남진산업고, 장성하이텍고)
	영광공업고	4개교(영광공고, 나주공고, 담양공고, 전남기술과학고)
	금파공업고	2개교(금파공고, 광주자연과학고)
	순천효산고	1개교(순천효산고)

**참고 2 유니테크(Uni-Tech) 운영 사업단(16개) 현황**

연번	대학 (소재지)	고교 (소재지)
1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소프트웨어학과 (경기 안성)	안성두원공업고등학교 전기전자과 (경기 안성)
2	유한대학교 기계공학과(기계시스템 전공) (경기 부천)	유한공업고등학교 자동차시스템과 (서울 구로)
3	동원대학교 정보전자전공 (경기 광주)	이천제일고등학교 디지털전자과 (경기 이천)
4	인천재능대학교 전자과 (인천 동구)	재능고등학교 스마트반도체과 (인천 동구)
5	대림대학교 글로벌조리제과학과 유니테크 전공 (경기 안양)	서서울생활과학고 국제조리학과 (서울 구로)
6	강동대학교 전기전자과 (충북 음성)	부원고등학교 반도체전자과 (경기 이천)
7	경북전문대학교 건축인테리어과 (경북 영주)	문경공업고등학교 건축과 (경북 문경)
8	군장대학교 자동차기계계열 (전북 군산)	이리공업고등학교 기계과 (전북 익산)
9	동의과학대학교 자동차계열 (부산 진구)	경남공업고등학교 기계과 (부산 진구)
10	신성대학교 제철산업과 (충남 당진)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신소재과 (서울 노원)
11	영남이공대학교 전기자동화과 (대구 남구)	경북공업고등학교 전자전기과 (대구 중구)
12	영진전문대학교 컴퓨터응용기계과 (대구 북구)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 기계과 (대구 달성)
13	전남도립대학교 자동차과 (전남 담양)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 (광주 광산)
14	전주비전대학교 자동차로봇학과 (전북 전주)	전주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 (전북 전주)
15	구미대학교 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경북 구미)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전자응용과 (대구 달성)
16	경남정보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계열 (부산 사상)	부산관광고등학교 한식조리과 (부산 서구)